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하부조직으로 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면서 기획재정담당관 및 등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원 7명(9급 7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7명)하되 기존에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8급 16명) 중 4명(8급 4명)을 종전의 직급(9급 4명)으로 환원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1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대군인정책과장 분장사무 중 일부를 제대군인지원과장 사무로 이관하고, 보상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 지원에 관한 사무와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관련 사무를 각각 명문화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보훈지청에 두는 과 단위 기구의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2.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정책총괄팀장”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정책총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관 내”를 “실 내”로, “담당관”을 “담당관 및 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관리

9의2.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⑧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보훈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중장기 전략 수립·관리 및 관련 정책 발굴
3. 정책의제 관리 및 점검
4.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대안의 수립·종합 및 조정

5.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6.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

7.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및 관리

제7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6·25 참전 등 호국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지원 및 관리·감독

11.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군장병 위문계획 수립 및 집행

13. 6·25 전쟁영웅 선정·홍보 및 참전유공자 선양

제17조제2항 본문 중 “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인천보훈지청·강원서부보훈지청·경남동부보훈지청만 해당한다)를”을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2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3”을 “14”로 하고, “위생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를 “16”으로 하고, “위생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3”을 “226”으로, 위생서기보 “17”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1”을 “19”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3”을 “131”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7”을 “223”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1”을 “210”으로, 위생서기보 “17”을 “1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1”을 “19”로 한다.

총리령 제137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16명은”을 “12명은”으로, “16명으로”를 “12명으로”로 한다.

총리령 제143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11월 30일”을 “2022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책총괄팀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책총괄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사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 제1호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 제1호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8명으로 본다.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17조제2항 관련)

명칭	과명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정책총괄팀장 ----- 기술서기관으로, 정책총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③ 삭제	④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각종 보훈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④ ----- ---.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관리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 연구	<삭제>

8. <u>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u> <u>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u> <u>지원 및 관리</u> 9. (생 략) <u><신 설></u> 10. 그 밖에 <u>관 내 다른 담당관</u> <u>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u> <u>사항</u> ⑤ ~ ⑦ (생 략) <u><신 설></u>	<u><삭 제></u> 9. (현행과 같음) 9의2. <u>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u> <u>한 조사에 관한 사항</u> 10. ----- 실 내 ----- 담당관 및 팀----- --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에</u> <u>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u> <u>다.</u> 1. <u>각종 보훈정책의 수립·종합</u> <u>및 조정</u> 2. <u>중장기 전략 수립·관리 및</u> <u>관련 정책 발굴</u> 3. <u>정책의제 관리 및 점검</u> 4. <u>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대</u> <u>안의 수립·종합 및 조정</u> 5. <u>보훈정책에 대한 연구기반</u> <u>조성 총괄 및 지원</u> 6. <u>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등</u> <u>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의</u> <u>연구</u> 7. <u>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u>	제7조(보상정책국) ①·② (생 략) ③ <u>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 11. (생 략) <u><신 설></u> 12. (생 략) ④ <u>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 7. (생 략) 8. <u>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u> <u>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그</u> <u>집행의 지도·감독</u> 9. ~ 11. (생 략) ⑤ (생 략)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 ④ (생 략) ⑤ <u>공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u> <u>분장한다.</u> 1. ~ 11. (생 략) <u><신 설></u> ⑥ (생 략)	<u>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u> <u>지원 및 관리</u> 제7조(보상정책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에</u> <u>다른 지원에 관한 사항</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u> <u>회 운영 및 관리</u> ⑥ (현행과 같음)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	· · <u>13</u>	· · <u>14</u>	+1
· · <u>위생서기</u>	· · <u>1</u>	· · <u><삭 제></u>	-1
· ·	·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	· · <u>15</u>	· · <u>16</u>	+1
· · <u>위생서기</u>	· · <u>1</u>	· · <u><삭 제></u>	-1
· ·	·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u>223</u>	<u>226</u>	+3
·	·	·	
·	·	·	
위생서기보	<u>17</u>	<u>1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1</u>	<u>19</u>	-2
·	·	·	
·	·	·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23</u>	<u>131</u>	+8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 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227</u>	<u>223</u>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 산서기보	<u>211</u>	<u>210</u>	-1
·	·	·	
·	·	·	
위생서기보	<u>17</u>	<u>16</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1</u>	<u>19</u>	-2
·	·	·	
·	·	·	